

##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

|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정 | 2009. 03. 01. |
| 개 정 | 2012. 03. 02. |
| 개 정 | 2012. 06. 01. |
| 개 정 | 2016. 12. 12  |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72조에 의거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'센터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·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
2.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3.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4.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
5.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3조 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원활한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수, 학습, 스마트학습지원부를 두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그리고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 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 초빙교수 등 전문가를 전문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
**제4조 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하되, 센터장, 부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규정·내규·지침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담당 전문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
5. 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점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제5조 (예산과 회계)**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및 대학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.
- ② 교비지원: 대학은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 한다.
- ③ 국고지원: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진행 할 경우 사업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우선 지원 한다.
- ④ 기타: 부득이 초과 예산이 발생 할 경우 대학 예산편정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.
- ⑤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** 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」으로 통합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.

1. 「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」